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90 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아이돌봄 지원법」개정(‘26. 4. 23.)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표현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제10조)
나. 지원대상의 기준시점 및 주민등록·실거주에 관한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6조)
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12조)
라. 상위법령의 용어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0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ho@korea.kr

라. 문 의 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원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한다.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사 지원사업

제6조 중 “신청일로부터”를 “신청일 현재”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를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임·위탁)”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임 또는 위탁”을 “위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법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하여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중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삭 제>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삭 제>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삭 제>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	제5조(지원사업) ① ----------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에 근거한·아이돌보미 사업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사 지원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지원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
제10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① ---- 아이돌봄사---------- ----------.
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아이돌봄사---------- ----------
제11조(위임·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제11조(위탁) ① ---------- ---------- ----------

및 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위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안전) 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하여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도·점검)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점검) ---------- ----------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9., 2025. 4. 22.>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제5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① 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2025. 10. 1.>

② 아이돌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 2025. 4. 22.>

④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2025. 4. 22., 2025. 10. 1.>

⑤ 아이돌봄사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 4. 22., 2025. 10. 1.>

1.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2022. 12. 27., 2025. 4. 22., 2025. 10. 1.>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봄사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5. 4. 22.>

④ 삭제 <2025. 4. 22.>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2., 2025. 10. 1.>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2.>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2., 2025. 10. 1.>

⑧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적성·인성 검사 및 제7항에 따

른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③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운영 기준 및 지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2.>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이에게 배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7.>

제11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

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와 아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 및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박 범 종

[붙임 3]

현 행 조 례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시행 2024. 7. 1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468호, 2024. 7. 12.,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아동청소년과), 044-300-4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5. 전년도 지원계획의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
2. 법에 근거한·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를 따른다.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8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임・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안전)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점검)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